

## 미국판례

형사소추 되지 아니한 자를 형사소추적 의미가 포함된 용어를 사용 기사화한 신문사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Rouch v. Enquirer & News of Battle Creek 457 N. W.20 74  
(미시간주 항소법원 ,1990)

## 사건개요

원고(Rouch)는 전처와 이혼한 후 Battle Creek 라는 곳에서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가 1979. 12. 우연한 기회에 전처를 만나 전처소생의 자녀들을 돌봐 줄 소녀를 전처의 집에 데려다 준 다음 전처와 외출을 한 후 같이 원고의 집으로 가서 자고 있던 중 경찰에 의해 성폭행혐의로 정식 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채로 동행되어 경찰서로 인계되었다. 원고는 당시 경찰이 오인한 것으로 결백을 주장하였으나 보호실로 인치, 수감되었다가 그 후 기소인부절차(arraignement)에 출석한다는 조건으로 석방되었다. (몇달후 다른 사람이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고가 보석으로 석방된 다음날 조간신문인 Enquirer & News of Battle Creek 에 원고가 전처의 집에서 애기를 돌봐주는 17 세의 여자를 전처의 자녀들 앞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어 charged 되었는데 다음 주 예정된 기소인부절차가 계류된 상태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원고는 일급성범죄혐의로 charged 되었는데 전처 및 전처의 자녀들로부터 진범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상세하게 혐의내용과 체포경위를 보도하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러한 기사는 위 신문사의 Kaufman 이라는 경력 10 년의 경찰서 출입기자가 직접 경찰서에 가든지 전화로 확인한 기사거리를 게재하던 관행대로 위 내용을 경찰서로부터 전화상 취득한 정보에 근거하여 게재된 것이다. 몇 달 후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신문사가 철회기사를 게재하자, 원고는 위 기사가 허위이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Calhoun 순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신문사측의 약식재판신청을 인용하였으나 미시간주 항소법원에 의해 취소되고 미시간주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므로 위 순회법원으로 환송되어 재심리 후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자 다시 당항소법원에 항소되었다.

## 판결요지

재판장 판사 Murphy 및 판사 Neff 의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그 후 기소인부절차가 취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성폭행 혐의로 charged 되었다는 신문기사 내 용은 charge 라는 용어가 미시간주법상 정식으로 법적 의미를 가지므로 실질적인 면에서 허위사실이며, 이러한 기사내용은 인신확보정도의 체포만으로는 「절차」(proceeding)로 볼 수 없으므로 미시간 형법상 「공적 절차에 관한 면책특권」(official proceedings privilege)조항에 의해 보호되지 아니한다.
2. 원고가 성폭행혐의로 charged 되었다고 보도한 신문기사에 근거한 명예훼손소송에서 원고측 감정증인이 당해 신문기자가 수사보고세미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경찰외의 다른 출처로부터 정보를 취득치 아니한 과실이 있고, 신문사로서도 기자의 기사화한 행위를 시정하지 아니한 과실과 불충분한 기사정정을 게재한 과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증언은 신문기자와 신문사의 과실유무에 관한 배심원들이 결정할 사실상 문제를 야기한다.
3. 원심법원이 배심원 평결 후 피고의 평결된 배상액의 감경신청(remittitur)을 각하한 결정은 평결이 충분한 증거에 의해 정당한 보상(just compensation)에 상응하는 상당한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으로 편견 및 편파적인 평의 내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 판결이유

1. 먼저 원고측이 청구원인사실을 입증할 증명의 정도가 이 사건에 있어 Enquirer기사의 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이미 주 대법원이 환송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항소이유를 살피건대 신문기사가 독자에 의해 기사내용의 요지(gist)만 읽히는지, 사실로서 제시된 단순한 정보(information) 자체로서 읽히는지에 불문하고 원고는 기사의 허위성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본다. 이 사건 게재된 기사내용은 원고가 어떠한 범죄로도 charged 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동일인으로 확인된(identified) 바도 없었으므로 어느 것도 진실된(true) 보도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환송전의 대법원 또는 당항소법원에서 명확히 이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대의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charge」의 의미를 「accuse」(고소)로 해석하는 것은 이미 환송전 대법원 판결의 결정에 반할 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용어사용례에도 반한다. 즉 charge 는 accuse 를 포함한 정식의 기소(an indictment, 또는 a formal criminal accusation)까지를 포함한다. 가사 charge 가 고소에 국한되어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는 그 내용상 보다 구체적인 법적 의미로 사용되어 일반적 사용례와 구별된다. 원심법원 역시 charge 가 정당한 기관에 의한 재판절차진행을 위한 충분한 증거에 기초한 권위있는 결정으로 판단함으로써 같은 견해이다. 나아가 신문사 자신의 철회기사내용에도 「accused 된」 원고가 결코 공식적으로(formally) charged 된 바 없다고 하여 용어사용에 대한 이해를 엿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기사게재가 미시간주 형법상의 「공적 절차에 관한 면책특권」(official proceedings privilege)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이미 환송전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인신확보에 지나지 아니한 체포는 법령상의 「절차」(Proceeding)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당원으로서도 인신확보정도의 단순한 체포는 문제된 기사가 허위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charge」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2. 원고가 피고 신문사의 과실을 입증함에 있어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였는가에 관한 항소이유를 살피건대 증거의 충분성에 관한 다툼에 있어 법원로서는 원고측에 가장 유리한 측면에서 증거를 살펴 그러한 증거로부터 도출된 합리적인 추론상의 이익이 원고에게 주어질 것이 요구되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사실인정상의 문제로서 배심원들이 결정할 사항이다. 원고측 감정증인인 신문학과 교수는, 피고신문사의 기자로서는 경찰과 전화로 통화한 후 사건의 이면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 및 수사상황보고 세미나에 참석하지 아니한 과실에 관하여 증언을 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신문사로서도 편집자들이 기자의 기사 내용을 수정하든지 게재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단순히 사후에 불충분한 철회 기사를 게재하는 등의 과실이 있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원고측 감정증인의 증언은 신문기자 및 신문사의 과실에 관한 배심원들의 고려사항으로서 사실상의 문제를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3. 피고신문사의 이 사건 신문기사의 게재가 법령상의 공적 절차에 관한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항소이유를 살피건대 미시간 형법상의 공적 절차에 관한 면책특권에 관하여는 환송전 대법원이 적시한 대로 단지 「치안판사」(magistrate)에 의해 취해진 사법절차(judicial proceedings)의 공표(publication)는 「사실심판사에 의한 재판절차에 대한 공표와 같은 범위로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는 것이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치안판사가 단지 보석보증금을 결정하기 위해 원고와 단시간 접촉한 것만으로는 이러한 공적 절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록상 문제된 기사가 치안판사에 의해 비공식적 절차에 의해 얻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결정은 아무런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측 감정증인의 법적 쟁점 자체(ultimate issues)에 대한 의견진술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항소이유를 살피건대 주장된 법적 쟁점 자체라는 것은 첫째 피고신문사의 행위가 「과실유형」(pattern of negligence)에 해당하였는지, 피고신문사가 「중과실」(grossly negligent)을 저질렀는지의 문제, 둘째 문제된 기사의 「면책특권」해당여부 문제, 첫째 문제된 기사가 명예훼손적(libelous)인지의 문제등에 관한 것이나 사실심 판사는 재량으로 감정증인이 증언하는 분야에 있어 전문가이고 증언사항이 그러한 전문가의 해석 또는 분석이 요구되며, 감정증인의 지식이 배심원의 사실인정에 있어 특별한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인정될 때에는 종국적 문제에 대하여 감정증인이 기록상 나타난 사실과 전문가의 지식, 기술에 근거하여 결론적인 의견진술을 하도록 허용할 수 있음은 미시간주 증거법상 명백하다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 원고측 신문학과 교수의 증언은 위에서 제시한 각 요건에 부합하므로 원심의 증거결정은 정당하고 아무런 하자가 발견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달리 재량의 남용으로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5. 피고측의 배심원 평결 후 평결된 배상액감경신청에 관한 항소이유를 살피건대 피고는

배심원들의 배상액에 관한 평결이 증거관계에 비추어 적절치 못하므로 당원이 최소한으로(to a minimum) 평결된 금액을 감액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측 변호인은 배상액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함이 없이 원심변론 종결 당시 단순히 원고측 신청의 배상액이 터무니없는(absurd) 것으로, 정당한 배상액 산정으로서 고려할 필요조차 없다고 진술하여 원고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실질적으로 달리 다투지도 않고 있다. 원심 판사는 명예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지만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당사자 변호인에게 이에 대해 충분한 변론기회가 제공되었을 뿐 아니라 배심원들의 평결이 편견에 의해 감정적으로 결정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당원도 원심의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배상액의 산정은 사실인정상의 문제로 배심원들의 고유의 판단영역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6. 결론으로, 1979. 12. 22. 피고신문사 발행의 신문에 게재되어 공표된 원고의 체포에 관한 보도에 근거한 본건 명예훼손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 만달러를 지급하라는 배심원들의 평결에 대한 권리 항소(appeal as of right)를 하고 있으나 원심의 평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Allen 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다수의견이 원고가 Enquirer 기사내용의 허위성에 관하여 충분히 입증을 하고 있다고 보고있으나 문제된 기사에는 원고가 성폭행을 범하여 accused 되었다고 적시하지 않고 단지 원고가 혐의자(a suspect)로 체포되었다는 사실과 혐의자로 지목된 경위에 관한 사실등을 보도하였을 따름으로 혐의자에 대한 범죄수사진행상황에 대한 언급만으로는 수사를 받고 있는 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accusation 정도를 야기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원고는 기사내용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책임을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부정확성(inaccuracy)이 결코 기사의 요지 (9151)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한 경미한 부정확부분(slight inaccuracies)이 있다고 하여 다른 면에서 정확한 기사의 전체가 허위로 되지 아니한다.

3. 신문기사가 실질적으로 진실한지(substantially true) 여부는 법률적인 문제(a legal question)이다.

## 위원회소식

사무처 인사 (승진) <1991 년 10 월 1 일부>

박용훈 관리실 부장 이상능 조사연구실 부장